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15. 1.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법무부 : 15건)

1. 2015년도 기재부 예산신청 자료 중 청소노동자에 관한 사업 설명자료 일체 및 2013~2014년 관련 자료 제출할 것1(p)
2. 범죄피해자 지원의 일환인 희망카페 전국 검찰청 등에 확대 할 것1(p)
3. 집중관리 검사 예규 및 명단 제출 할 것1(p)
4. 발부된 감청영장, 일본 미국 등의 발부 건수, 영장 1건당 요구 자료 수 자료 제출할 것1(p)
5. CJ 회장 구속 정지 관련 자료 제출할 것1(p)
6. 영장 발부, 집행에 대한 전산 시스템 개선할 것2(p)
7. 다른 나라 감청사례(미국 등) 우리보다 많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례, 통계 제출할 것2(p)
8. 감청과 관련하여 영장을 받아오지만 집행기관이 어떻게 집행 하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 통신업체도 수사관이 요청을 하면 적법한지 여부 가리지 않고 전부 내줌. 「통신비밀보호법」 제때 개정 못한 국회도 책임이 있음. 법원, 검찰도 현재 관행 점검해서 시정할 부분 시정할 것2(p)
9. 감청영장 집행 사후단계 검찰의 공백이 있음. 영장이 나가면 전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담당하고 관리 잘 안함. 집행절차를 기록하게 하는 지침이나 예규를 만들 것2(p)
10. 배임죄 관련하여 제대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침. 독일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개정 할 것2(p)
11. 사이버 검열과 관련하여 검찰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통계(패킷감청과 일반감청을 따로) 정리필요3(p)

12. 감청 후 통지, 감청종료 후 감청현황 법원 제출 등에 관한 제도 및 법률 보완할 것 3(p)
13. 「통신비밀보호법」이 변화된 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카카오톡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이 불충분함. 이에 관하여 개선할 것 3(p)
14. 통신제한 사후 통지를 3월 이내에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제정 필요 3(p)
15.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4(p)

(대검찰청 : 12건)

1. 전년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4(p)
2.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에 있어 선순위 채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4(p)
3. 다음카카오에서 법제에 관한 정비가 있기 전에는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수사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4(p)
4. 검찰의 수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p)
5.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 연기, 또는 신용카드 납부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벌금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5(p)
6. 주한미군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60% 가량이 불기소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한미군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것 5(p)
7.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독일의 수사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에서 연구하여야 할 것 6(p)

8. 기소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는 기소대배심제도의 도입
이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장 호선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 6(p)
9. 공안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재판부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 6(p)
10.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증거조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6(p)
11. 인천시장 선거, 남양주시장 선거 등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7(p)
12. 검찰 수사에 따른 자살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p)

(서울고등검찰청 : 2건)

1.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지침 제40조에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자정 이전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정을 넘겨 수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수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7(p)
2.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 8(p)

(부산고등검찰청 : 5건)

1.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상고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고심
에서 결론이 뒤집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고를 지양
할 것 8(p)
2.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항고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9(p)

3.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직폭행을 줄일 것9(p)
4.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10(p)
5. 국방사업에 관한 부정계약 등 군의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10(p)

(광주고등검찰청 : 4건)

1. 검사의 직접 검시율이 2 ~ 5%에 불과함. 직접 검시를 더 늘릴 것10(p)
2. 광주지방검찰청의 경우 해외도피 사범의 검거율이 낮은데 이를 시정할 것11(p)
3.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11(p)
4. 압수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12(p)

(대전고등검찰청 : 12건)

1. 수사관 사기 진작을 위해 독신자 숙소 환경 개선할 것12(p)
2.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12(p)
3. 법원, 검찰, 경찰이 공고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것13(p)
4. 학생범죄 처분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활성화할 것13(p)
5.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조건부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시행 효과를 검증할 것13(p)
6. 진술번복, 인권침해 사건 등 필요한 경우 영상녹화조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삭감을 우려한 불필요한 영상녹화는 지양할 것13(p)

- 7. 일선 검사, 수사관 인사 시 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14(p)
- 8. 일선 여성 검사의 출산, 육아휴직 시 보충인력 충원 필요 14(p)
- 9. 기술유출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 14(p)
- 10. 민관유착, 첩피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14(p)
- 11.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15(p)
- 12. 새로운 모바일환경, 개인사생활보호에 맞는 실시간 감청을 위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 15(p)

(대구고등검찰청 : 19건)

- 1. 항고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할 것 15(p)
- 2. 영상녹화 활성화 할 것 15(p)
- 3. 독직폭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처 및 관련 현황에 대해 상세 보고할 것 16(p)
- 4.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통지현황 자료 제출 할 것 18(p)
- 5. 반부패 등에 있어 확고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 18(p)
- 6. 성폭력 사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8(p)
- 7. 청도 송전탑공사 방해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19(p)
- 8. 보복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및 검거할 것 19(p)
- 9. 보복범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 철저히 대응할 것 ... 19(p)
- 10. 마우나 리조트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제도 개선의견 등 국회에 제출할 것 19(p)
- 11. 구마 고속도로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19(p)

12. 최근 1-2년 간 사이버 상 허위사실유포 등에 관한 단속지시
공문 사본 제출할 것 20(p)
13. 폭력, 조직, 마약류 범죄근절을 위해서 노력할 것 20(p)
14. 관피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18(p)
15. 유가보조금 편취사범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 후 수사 결과를
감사원, 기재부 등에 제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20(p)
16. 복지관련 보조금 편취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 21(p)
17. 「통신비밀보호법」상 업체의 협력의무 및 위임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정비할 것 21(p)
18. 통신감청 압수수색 영장을 남용하지 말 것 21(p)
19. 공무원 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
..... 21(p)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부 본 부 | 1. 2015년도 기재부 예산 신청 자료 중 청소노동자에 관한 사업설명자료 일체 및 2013~2014년 관련 자료 일체 제출할 것 | ○ 「2015년도 기재부 예산신청 자료 중 청소노동자에 관한 사업설명자료 일체 및 2013~2014년 관련자료 일체」를 별첨과 같이 제출함 | | | | | | | | | | | | | | | | | | | | | |
| | 2. 범죄피해자 지원의 일환인 희망카페 전국 검찰청 등에 확대 할 것 | ○ 각급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희망카페를 설립 희망할 경우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음 ※ 현재 운영 중인 대전지검, 서울서부지검, 광주지검 희망카페는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3. 집중관리 검사 예규 및 명단 제출할 것 | ○ 「집중관리 검사 예규」 및 「명단」은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인사 업무를 위해 비공개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4. 일본, 미국 등의 감청 영장 발부 건수 관련 자료 - 일본, 미국 등의 감청영장 1건당 요구자료 수 관련 자료 | ○ 감청영장 발부 건수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th> <th colspan="3">일 본</th> <th colspan="3">미 국</th> </tr> <tr> <th>연도</th> <th>'11</th> <th>'12</th> <th>'13</th> <th>'11</th> <th>'12</th> <th>'13</th> </tr> </thead> <tbody> <tr> <td>건수</td> <td>25</td> <td>32</td> <td>64</td> <td>2,732</td> <td>3,395</td> <td>3,576</td> </tr> </tbody> </table> ○ 감청영장 1건당 요구자료 수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 일 본 | | | 미 국 | | | 연도 | '11 | '12 | '13 | '11 | '12 | '13 | 건수 | 25 | 32 | 64 | 2,732 | 3,395 | 3,576 |
| | | 일 본 | | | 미 국 | | | | | | | | | | | | | | | | | | |
| 연도 | '11 | '12 | '13 | '11 | '12 | '13 | | | | | | | | | | | | | | | | | |
| 건수 | 25 | 32 | 64 | 2,732 | 3,395 | 3,576 | | | | | | | | | | | | | | | | | |
| 5. CJ 회장 구속정지 관련 자료 제출할 것 | ○ 국정감사 당시 현장에서 제출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부 본부 | 6. 영장발부, 집행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선할 것 | ○ 감청 등 통신수사 통계를 포함한 형사사법통계 관리,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전산시스템 정비·개선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음 | | | | | | | | | | | | | | | | | | | | | |
| | 7. 다른 나라 감청사례 (미국 등) 우리보다 많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례, 통계 제출할 것 | ○ 감청영장 발부 건수(일본, 미국) <table border="1" data-bbox="805 560 1428 728"> <thead> <tr> <th></th> <th colspan="3">일본</th> <th colspan="3">미국</th> </tr> <tr> <th>연도</th> <th>'11</th> <th>'12</th> <th>'13</th> <th>'11</th> <th>'12</th> <th>'13</th> </tr> </thead> <tbody> <tr> <td>건수</td> <td>25</td> <td>32</td> <td>64</td> <td>2,732</td> <td>3,395</td> <td>3,576</td> </tr> </tbody> </table> | | 일본 | | | 미국 | | | 연도 | '11 | '12 | '13 | '11 | '12 | '13 | 건수 | 25 | 32 | 64 | 2,732 | 3,395 | 3,576 |
| | | 일본 | | | 미국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11 | '12 | '13 | '11 | '12 | '13 | | | | | | | | | | | | | | | | |
| | 건수 | 25 | 32 | 64 | 2,732 | 3,395 | 3,576 | | | | | | | | | | | | | | | | |
| 8. 감청영장 집행에 대한 관리 관행 중 시정할 부분을 시정할 것 | ○ 감청 집행 후 통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전산화 시행하고 있음 ○ 감청영장 집행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 하겠음 | | | | | | | | | | | | | | | | | | | | | | |
| 9. 사법경찰관이 감청영장을 집행할 경우 검찰에서 이를 관리하는 지침·예규를 만들 것 | ○ 감청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 | | | | | | | | | | | | | | | | | | | | |
| 10. 배임죄 관련하여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침. 독일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개정할 것 | ○ 배임죄에 관한 수사 사례나 판례가 적지 않아 판례 등을 통해 배임죄 적용범위와 기준이 정립되어 있음 - 판례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 ○ 독일, 일본 등 국가도 우리 형법과 유사한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이나 일본은 배임죄에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구성요건이 우리 형법상 배임죄보다 넓게 인정될 소지도 있음 - 독일은 주식법에서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사상 주의의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법무부 본부 | | <p>※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취지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임</p> <p>○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우리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죄는 기업 경영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임죄 개정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p> |
| | 1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개선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통계를 개선할 것 | <p>○ 관련법에 따라 적법절차의 엄정 준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 하겠음</p> <p>○ 경찰, 법원 등과 협조하여 추후 정확한 통계 자료 추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p> |
| | 12. 감청 후 통지, 감청 종료 후 감청현황의 법원 제출 등에 관한 제도 및 법률을 보완 할 것 | <p>○ 감청 집행 후 통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전산화 시행 하고 있음</p> <p>○ 앞으로도 감청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p> |
| | 13. 「통신비밀보호법」이 카카오톡 등 변화된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p>○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된 통신 환경이 관련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 특히, 통신사업자의 설비 구비 의무 규정, 협조 의무 구체화, 협조 의무 불이행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p> |
| | 14. 통신제한 사후 통지를 3월 이내에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 통신제한 사후 통지 제도 등 감청 수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법무부 본 부 | 15.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 검사·수사관 등에 대한 국가관·공직관 교육, 엄정한 감찰·징계, 검사적격 심사 강화, 검찰 업무 전문성 제고 통한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대검찰청 | 1. 전년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매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작성·보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적 내용에 대한 원인분석 후 심도 있는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음 |
| | 2.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에 있어 선순위 채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 검찰에서 책임재산 확보 당시 선순위채권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거나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책임재산이 적정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은닉 재산을 추가 환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 현재까지의 추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국정감사 현장자료를 통하여 기 보고드린 바 있음 |
| | 3.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불응으로 인한 수사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감청영장 집행불응으로 인한 수사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 | 4. 검찰의 수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수사기법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전담검사 워크숍(공안·특수 등) 연 1회 개최, 매월 수사기법 전수강좌 실시(공안·특수 등), 매월 회계분석 수사기법 세미나 개최, 검사 및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검찰청 | | <p>수사관 대상 기업회계분석교육(연중), 수사관 대상 계좌추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p> <p>○ 앞으로 검찰수사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분야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임</p> |
| | <p>5.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 연기 또는 신용카드납부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벌금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p> | <p>○ 벌과금 분납 및 납부연기와 관련하여 '13. 2. 17.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 개정을 통하여 분납 확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음</p> <p>※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자 추가 확대 및 기한 연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3개월 범위 내 1회 ⇒ 3개월 범위 내 2회 연장 <p>○ 또한 300만원 미만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의원발의('12. 7. 26.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되어 법안 소위 계류 중임</p> <p>○ 향후 벌과금에 대한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 등을 적극 확대·시행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노역장유치 집행으로 인한 생업지장 최소화에 노력하겠음</p> |
| | <p>6. 주한미군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60% 가량이 불기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한미군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것</p> | <p>○ SOFA 사건의 죄명별 특성(교특, 폭력사건 포함), 불가피하게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 등으로 불기소율이 다소 높은 것임</p> <p>○ 우리 안보상황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 및 정의관념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검찰청 | 7.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독일의 수사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할 것 | ○ 독일 등 외국의 모바일 메신저 관련 수사실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 중에 있음 |
| | 8. 기소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는 기소대배심제도의 도입이나 검찰 시민위원회의 위원장 호선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 | ○ 기소대배심제도 도입이나 기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선진 외국 입법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10. 7. 도입된 이후 '14. 9.까지 4회에 걸쳐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운영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겠음 |
| | 9. 공안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안재판부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 | ○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한 안보위해사범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법조인이 수사,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앞으로 법조계,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
| | 10.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증거조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 ○ 특별수사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하였고, ○ 다만, 증거제출 과정에서의 검사 과오 등에 대하여는 감찰을 거쳐 징계조치(정직, 감봉)하였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검찰청 | 11. 인천시장 선거, 남양주 시장 선거 등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 ○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처분하였음 |
| | 12. 검찰 수사에 따른 자살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수사 도중 자살에 이르게 된 이유로는 불안감, 자책감, 두려움,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 심리적 요인을 비롯하여 사안별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사실무 관행 개선, 지속적인 직원 인권 교육과 점검, 사건관계인의 불편·불만사항 수시 청취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강압행위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적법 절차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1.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지침 제40조에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자정 이전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정을 넘겨 수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수사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피조사자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는 재출석 부담에 따른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4년 관내 심야조사 건수 총 732건(2013년 524건) · 서울중앙 431건, 서울동부 22건, 서울남부 16건, 서울북부 6건, 서울서부 17건, 의정부 6건, 인천 90건, 수원 85건, 춘천 59건 ○ 서울중앙지검 등 관내에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 집중되어 있어 심야조사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각 청별로 심야조사 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2.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 |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심야조사 하는 경우라도 본인 동의와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의 허가 등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피조사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고 있음 ○ 향후에도 일선청 심야조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심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시적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 사이버상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의 폐해가 심각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다만,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소·고발·진정 등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있는 사안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압수수색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향후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하겠음 |
|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1.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상고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고를 지양할 것 |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취지를 참고하여 향후 상소의 실익과 인용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상급법원의 통일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가 필요한 경우를 신중히 선별하도록 하겠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2.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항고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사경을 면밀히 지도하고 교양하여 사안을 명확히 규명한 후 구속영장을 신중히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 영장기각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영장을 재청구 하겠음 ○ 영장재청구시 증거보강 및 법리검토를 철저히 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영장 재청구 적정여부 심의를 적극적으로 회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부산지검)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입장을 적극 개선하고 있음 ※ 2014. 11. 3. 간담회 개최 |
| | 3.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직폭행을 줄일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교육·직무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검사·수사관들에게 영상녹화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면서 영상녹화 조사 적극 활용을 독려하고 있음 ※ 창원지검은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속기사를 활용, 조서작성을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담검사를 두어 관련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임 ○ 앞으로도 영상녹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하겠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4. 울산 교육감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 울산교육청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친인척 3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였음 |
| | 5. 국방사업에 관한 부정 계약 등 군의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 | ○ (부산지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공인 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고발한 17개 군납업체를 수사하여 16명을 인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있음 ○ (울산지검) 해군 차기 호위함 납품 비리 관련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음 ○ (창원지검) 방위사업비리 단속 거점청으로서, 2014년 국정감사기간 동안 핵심 방산물자인 ‘단안형 야간투시경’ 전체 설계도면을 불법취득하여 사용한 사범 4명 기소(3명 구속), K-9 자주포 등 군수품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한 사범 53명 기소(12명 기소) 등 방위사업비리를 엄단하였음 ○ 향후에도 방위사업비리에 대해서 수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1. 감사의 직접 감시율이 2~5%에 불과함. 직접 감시를 더 늘릴 것 | ○ (광주지검) 감사 직접 감시 및 부검 업무 철저 수행을 위해 전담부장을 지정하여 순번제에 따라 직접 감시 및 부검 참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바, 직접 감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 ※ 2014년 4/4분기 동안 검사 21명이 12회에 걸쳐 직접 부검에 참여하도록 조치, 검사 직접 검시 및 부검의 필요성에 관하여 법의학 전문의의 특강을 진행 ○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검시를 실시하여 직접 검시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
| | 2. 해외도피사범의 검거율이 낮은바, 이를 시정할 것 | ○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 및 효력 상실 조치를 통한 강제귀국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검거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소재파악의뢰 - 경찰청 외사과에 인터폴 수배의뢰 - 대검 국제자금추적팀에 소재파악의뢰 - 대상자 및 가족의 통화내역 분석 등 ○ 타청 해외도피사범 검거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피사범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 해외도피 발생유형을 분석하여 국외 도피 가능성이 높은 사범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강화, 사전에 해외도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 | 3.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 2014. 5. 성희롱 예방교육(시청각교육 -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위하여’)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 2015년 상반기 중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4. 압수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들이 검찰청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거리 가환부 신청자는 팩스로 가환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가환부 허가가 나면 유선으로 통보 한 후 압수물을 우편으로 송부해주고 있음 ○ 환부결정 압수물에 대해서도 원거리 민원인에 대해 압수물을 우편 송부하고 있음 |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1. 수사관 사기 진작을 위해 독신자 숙소 환경 개선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0.경 독신자숙소(20개실) 신축 및 주기적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장판 등 보수공사 : 2011년 - 창호교체공사 : 2013년 ○ 현재 숙소 20개실에 25명이 입주 (5개실 2인 사용), 숙소 부족 및 노후 등을 감안하여 숙소 신축 필요성 및 위치, 비용 등을 검토중에 있음 (대전고검) |
| | 2.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2014. 4. 25.) 중임 ○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을 직장 교육 또는 동영상 사이버 교육을 통해 90%이상 실시 ○ 성희롱 고충 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사무관과 여직원 회장을 상담원으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만들고, 수시로 직장 내 성희롱 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대전고검)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3. 법원, 검찰, 경찰이 공고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검) 격월로 대전 지역 검찰청 및 법원의 기관장 간담회 개최, 수시로 수사지휘 관서 경찰과 간담회 개최 등 법원·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청주지검) 법원, 경찰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음 ○ 앞으로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욱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음 |
| | 4. 학생범죄 처분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활성화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소년범 147명에 대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를 활용 ○ 앞으로도 소년의 범법 행위를 학교에 알려 오히려 소년의 교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활용할 예정임 |
| | 5.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조건부기소유에 제도에 대한 시행효과를 검증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시행 효과 등을 검증할 계획임 ※ 2014년 5월 제도 시행 이래, 대전지검은 교통 관련 소년범 66명에 대해 청소년 준법운전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에 처분하였음 |
| | 6. 진술번복, 인권침해 사건 등 필요한 경우 영상녹화조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삭감을 우려한 불필요한 영상 녹화를 지양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조직 범죄의 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고, 그밖에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 ○ 앞으로도 영상녹화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 처리 및 증거보전, 사건관계인들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겠음 |
| | 7. 일선 검사, 수사관 인사 시 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 ○ 사전 의견조회 등을 통해 인사이동 대상 검사 및 수사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사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 | 8. 일선 여성 검사의 출산, 육아휴직 시 보충인력 충원 필요 | ○ 검사 정원을 '15년부터 '19년까지 총 35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음 ('14. 12. 31.) 법무부와 협의하여 여성검사의 출산·육아휴직을 충분히 반영하여 증원된 검사 정원을 청별로 배정하는 등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음 |
| | 9. 기술유출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 | ○ 기술유출에 따라 국가와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이 크다는 점에 유념하여, 기술유출사범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음 |
| | 10. 민관유착, 첩피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 ○ 민관유착 비리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음 ※ 대전지검은 2014. 5. 민관유착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후 첩피아를 비롯한 민관유착 비리 관련자 29명(9명 구속)을 기소하는 등 민관유착 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11.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안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임 |
| | 12. 새로운 모바일환경, 개인사생활보호에 맞는 실시간 감청을 위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 | ○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감청 관련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개선 건의하겠음(대전지검) ○ 향후 실시간 감청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될 경우,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음(청주지검) |
| 대구고검 대구지검 | 1. 항고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 ○ 2014. 7. 노무사, 변리사, 非법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 12명을 신규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 인적구성을 개편하였음 ○ 수감대상기간 항고심사회를 적극 개최하여 총 183건을 심의함으로써 항고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항고심사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항고사건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음 |
| | 2. 영상녹화를 활성화할 것 | ○ 수감기간 동안 822건/903명에 대해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여 전년(462건/533명)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영상녹화를 적극 실시하여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대구고검 대구지검</p> | <p>3. 독직폭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처 및 관련 현황에 대해 상세 보고 할 것</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1.~2014. 7.까지 579명을 접수하였고, 그 중 각하 288명, 무혐의 219명, 이송 등 44명임 ○ 수감기간을 기준으로 관내에 접수된 독직폭행 사건(184건) 중 기록확인이 가능한 사건 169건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교도관이 90명, 경찰관이 79명이었음 ○ 독직폭행 고소·고발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건은 없었고, 대부분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들이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한 것이었음 ○ 특히 독직폭행 사건 579명 중 절반 정도인 288명은 고소·고발 자체에 의하더라도 혐의 인정되지 않아 각하 처분 하였음 ○ 무고에 해당하는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 및 교도관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인지 (3명), 구속 기소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장 수형 중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고 발로 차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한 사범 1명을 기소하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수회 발로 찼다고 무고한 사범 1명을 기소하여 각 실형 선고(상주지청) ※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59회에 걸쳐 무고한 사범 1명을 구속 기소(대구서부지청) ○ 대구고검 관내에 11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관내 사건접수 건수는 전국의 10% 내외인 반면, 관내 수감된 기결수는 전국의 20%에 이룸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대구고검 대구지검</p> | | <p>○ 또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교도관을 괴롭히는 수용자들은 대개 중범죄자인데, 이들이 관내 경북 북부제2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고, 중범죄자 구금시설이 4개나 있는 의성지청의 경우, 독직폭행 사건 접수가 206명으로 청 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p> <p>※ 의성지청 독직폭행 사건 피고소·고발인 중 203명이 교도관, 3명은 경찰관이었는데, 고소인 1명은 무려 10번을 반복 고소하여 교도관 103명이 입건되기도 하였음</p> <p>○ 독직폭행 방지를 위해 2014. 2.부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을 전면 실시하여, 화상 면담을 통해 체포·구금 과정에서 억울한 점은 없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음</p> <p>○ 또한, 평소 직원들에게 인권·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녹화 조사를 확대하며, 유치장 감찰을 통하여 억울한 체포·구금이나 가혹행위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p> <p>○ 특히, 2014. 6. 대구지검 구치감 및 경찰관실 점검시 경찰관실 창문에 차단막이 없어 외부인들이 호송되어 온 피의자들을 볼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즉시 차양막을 설치하여 개선한 바 있고, 2014. 12. 대구구치소에 직접 입장하여 미결수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 바도 있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구고검 대구지검 | 4.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통지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건별로 통지하고 있고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통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 | 5. 반부패 등에 있어 확고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 14. 관피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감기간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사건에서 사업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수수한 에너지관리공단 前 부이사장 및 現 전북지역 본부장 등 5명을 구속하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 수수한 세무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이후에도 원전 및 화력발전 관련 납품비리, LH공사 관련 부당수주 사건 등을 수사하여 32명 인지, 18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음 ○ 앞으로도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특수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통해 민관유착 비리 척결에 매진하겠음 |
| | 6. 성폭력사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 친고죄 폐지 등 영향으로 성폭력 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폭력 전담 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검사, 검사 3명)을 구성하고 경찰 및 윈스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지휘·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동 단계에서부터 은폐되는 성폭력 범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음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구고검 대구지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범죄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재범가능성이 있는 모든 성폭력 사범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 | 7. 청도 송전탑공사 방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 ○ 철저한 수사로 현재까지 44명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임 |
| | 8. 보복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및 검거할 것 9. 보복범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 철저히 대응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검은 2014년 보복범죄로 3명을 직접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는 등 보복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비상호출기 지급 및 이사비 지원 등 예방정책을 적극 실시 중임 ○ 또한 대구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범죄자의 교화와 재활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복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임 |
| | 10.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제도 개선의견 등 국회에 제출할 것 | ○ 2014. 12. 22. 법무부 클린피드백 유관부처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처간 협의 진행하는 등 조치하였음 |
| | 11. 구마고속도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 ○ 수사검사가 항소심을 직접 담당하면서 부검의, 국과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활동 중임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구고검 대구지검 | 12. 최근 1-2년간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 등에 관한 단속지시 공문 사본을 제출할 것 | ○ 국정감사 당시 현장에서 제출하였음 |
| | 13. 폭력, 조직,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할 것 | <p>○ 조직폭력사범은 은밀한 범행으로 적발이 어렵고 법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되어 구속율이 떨어지고 있음</p> <p>○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 으로 폭력조직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p> <p>○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직폭력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음</p> <p>※ 수감기간 중 경찰과 협력하여 포항 월포 해수 욕장 이권 다툼을 벌인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26명을 검거, 16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고, 강력부에서 동구연합파 두목 등 40명을 단속한 바도 있음</p> <p>○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적극 단속하고, 세관, 미군 CID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소포 등의 관리 및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예정</p> |
| | 15. 유가보조금 편취사범 관련, 철저한 수사 후 수사결과를 감사원, 기재부 등에 제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p>○ 수사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p> <p>○ 앞으로도 보조금 수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적절히 통보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대구고검 대구지검 | 16. 복지 관련 보조금 편취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검은 특수부, 수사과를 중심으로 보조금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가보조금 편취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보조금 편취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보조금 지급현황 및 실태 등 점검하고,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보조금 편취 비리 통보받아 활용 ※ '14. 9. 29. 보조금 편취사범 단속 관련 대구 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과 검·경 공조회의 개최하는 등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였고, 향후 검·경 협업을 통한 집중 수사 실시 예정 |
| | 17. 통신비밀보호법상 업체의 협력의무 및 위임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정비할 것 | ○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대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음 |
| | 18. 통신감청 압수수색 영장을 남용하지 말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감기간 동안 관내 통신제한조치는 2건으로, 17건이었던 전년 대비 88.2% 감소하였음 ○ 앞으로도 청구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제한기간이나 대상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음 |
| | 19. 공무원 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 |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분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